

신재생에너지 사업

• 작성일 : 2015.12.01.




○ 사업 개요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이용한 청정에너지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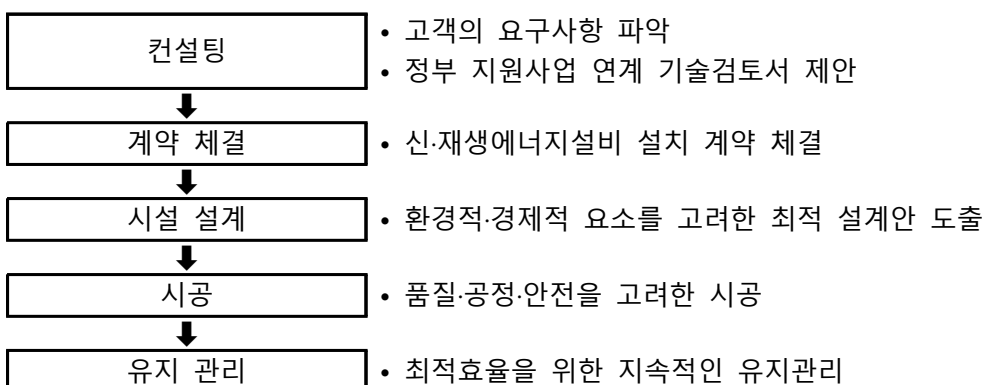
최근 화석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선정을 통한 질적 향상과 설치비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보급 사업을 통한 양적 확산을 병행·추진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신일이앤씨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시공업체(2010),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주택, 건물) 참여기업(2011)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신·재생에너지시스템 적용 컨설팅에서부터 설계, 시공에 이르기까지 신재생에너지 설치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주요 업무

항목	업무내용	
 신·재생에너지 기술컨설팅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하여 적용 타당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 사용 패턴 분석 (냉·난방, 급탕 소비량) 환경적 요인 분석 (기존 설비 시스템, 주변 환경) 설치 지원금 지급 가능 여부 분석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주택 및 건물 지원사업, 융·복합 지원사업 등의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고객이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받을 수 있도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 지원사업 및 건물 지원사업 융·복합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시공사업	한국에너지공단 지정 신·재생에너지 참여시공 업체로 우수한 시공품질과 유지관리를 위한 고객지원으로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건물 신·재생에너지 시공사업 (그린홈, 일반건물)

○ 진행 절차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 주택 지원 사업

○ 개요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무상 보조·지원하는 사업

○ 지원 대상

• 개별 단위 지원

구분		내용	
신청 대상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공동 주택	기존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대표(등) *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 동의서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내역 제출 필수
		신축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대표 등 * 설치 완료 기한 내 설치 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greenhome.kemco.or.kr)	

• 마을 단위 지원

구분	내용
신청 대상	동일 최소 행정구역 단위(리, 동)에 있는 1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정 등 주민편의시설은 신청 불가 * 마을단위 지원 신청을 희망할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당자에게 문의
신청 방법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 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사업계획서 작성 (참여기업+신청자)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5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 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사업계획서 제출 (신청자 → 광역 지자체)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5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 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사업계획서 접수 (광역 지자체 → 신재생에너지센터)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5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 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사업계획서 평가 및 선정 (신재생에너지센터)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5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 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온라인 신청 (신청자 →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greenhome.kemco.or.kr)) </div>

□ 건물 지원 사업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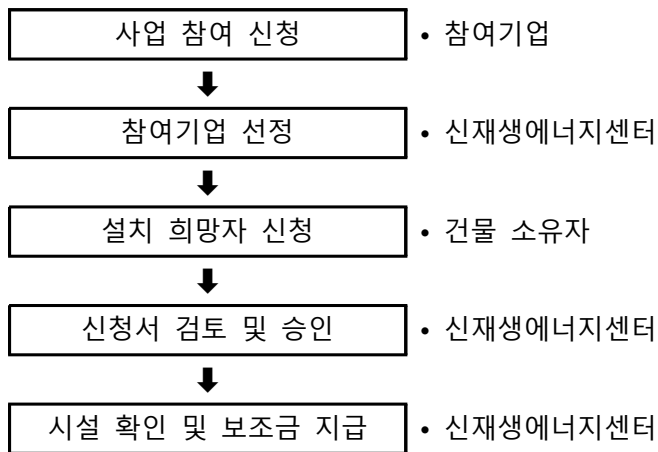
주택 외의 건물에 신재생설비를 설치할 때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무상 보조·지원하는 사업

○ 지원 대상

모든 일반건물

(단, 주택,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및 설치의무화 적용건물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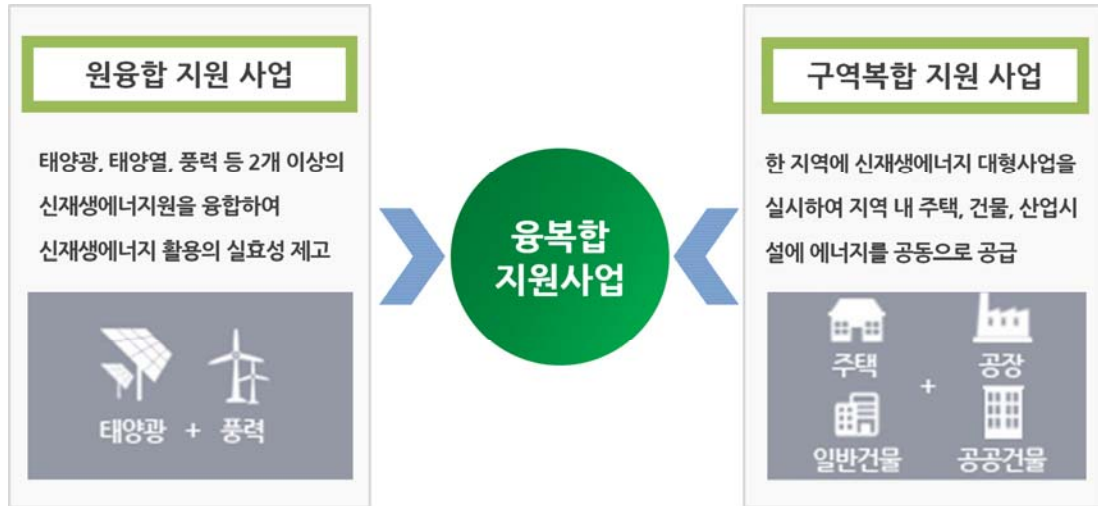
○ 추진 절차



□ **융·복합 지원 사업**

○ 개요

신재생에너지원 융합과 구역 복합 등을 만족하는 성과통합형 지원사업으로, 태양광, 태양열 등 상호보완이 가능한 에너지원 설비를 특정지역의 주택·공공·상업(산업)건물 등에 설치하여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사업



○ 지원 대상

- 에너지원간 융합사업
태양광, 풍력, 태양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융합
- 구역 복합사업
특정지역의 주택, 공공·상업(산업)건물 등 지원대상에 에너지를 공동으로 공급
* 수송용 연료전지, 전기자동차 및 충전스테이션 등 사업은 지원 제외

○ 신청 자격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설치기업과 민간 등이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출연 공공기관 포함)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신청
* 컨소시엄 : 정부지원금 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등에 대한 매칭과 보조설비(에너지절약설비 등) 설치비용 부담

○ 지원 규모

- 총 사업비 : 해당 시설물 등에 설치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와 시스템 설계비로 구성
- 지원 범위 : 총 사업비의 50%내에서 지원. 단, 연료전지 사업은 70% 내에서 지원

□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

○ 개요

일정 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는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 신재생에너지시스템 설치 필요

○ 사업내용

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RPS 제도에 참여하여 공급의무자에게 발전량을 팔고 공급의무자는 매년 의무량에 맞게 REC(공급인증서)를 사서 충당함

○ 발전사업자의 RPS 제도 참여 절차

